

2026년 서울시기능보강지원사업 장비보강
비누압출기,비누자동성형기,배쓰밤프레스기
소액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견적서 제출 시 주의사항(필독)

-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제출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 투찰업체는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및 요구 물품 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본 입찰 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가. 발 주 처: 성모자애보호작업장
- 나. **건 명: 2026년 서울시기능보강지원사업 장비보강 비누압출기,비누자동성형기,배쓰밤프레스기 구입**
- 다. 물품내역: 비누압출기,비누자동성형기,배쓰밤프레스기 구입 및 설치 ※요구물품 시방서 (사양서) 참조
- 라.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주말 포함)
- 마. 납품장소: 수요기관 지정장소
- 바. **기초금액: 금52,250,000원(금오천이백이십오만원)** ※ 부가가치세 포함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 가. 총액입찰, 수의계약(견적), 청렴계약대상, 지역제한(서울,경기도), 전자입찰입니다.
- 나. 적격심사 비대상이며, 공동수급계약(공동이행, 분담이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다. 견적서의 제출은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라. 견적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3. 견적서 제출(개찰) 일시 및 장소

견적서 제출 시작일시	2026. 9. 02. 11:00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	2026. 9. 11. 11:00
개찰일시	2026. 9. 11. 12:00
견적서 제출 재공고	※ 개찰 후 적격자가 없을 경우(별도 통보 없음, 투찰자 확인) 재공고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개찰장소	성모자애보호작업장 입찰 담당자 PC (전산장애 발생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모든 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여야 합니다.

- 가.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 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서울, 경기도, 충청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단,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체결일까지 소재하고 있어야 함

- 나. 발주처에서 제시한 요구물품시방서에(규격과 동등 이상 물품) 따라 과업수행이 가능한 **국내 물품 직접제조 업체**

- 다. 본 견적서 제출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진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의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홈페이지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라.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7호 및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

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나.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결정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

- 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서 정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상기 예규 <별표1>의 『수의계약 배제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2) 동일가격의 입찰(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방식을 적용합니다.
- 3)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위배 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 4)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시행규칙 규정에 의합니다.

7. 견적서 제출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무효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무효입찰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8. 하도급에 관한 사항

- 가. 본 물품 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나. 본 물품 계약의 하도급에 관하여 지방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다.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모두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수의계약 체결 제한

-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10조에 따라, 【붙임3】“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원본을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하며,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1. 기타사항

-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계약 일반조건 및 입찰유의서), 회계예규, 기타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②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붙임1】「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지역업체의 장비와 자재를 우선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바. 문의처

- 견적서 제출, 물품내용에 관한 사항: 성모자애보호작업장 (☎ 02-445-3377)
- 전자입찰 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사. 견적서 제출 결과는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입찰정보)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9. 1.

성 모 자 애 보 호 작 업 장 원 장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26. . 0000회사 대표이사 (인)

[붙임 3]

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 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